

2018년 대전광역시 「아동학대 예방의 날」 기념세미나

‘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.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’

□ 행사 개요

- 주 최 : 대전광역시
 - 주 관 :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
 - 행사명 : 2018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세미나
 ‘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.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’
 - 목 적
 -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부, 일반인, 아동단체 및 신고의무자 관련 단체들에게 인식 제고 및 신고의 무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함.
 - 아동학대 현황 공유,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신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함.
 - 행사일시 : 2018. 11. 22.(목) 13:30~16:10 (2시간 40분 소요)
 - 장 소 :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 - 내 용 :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의무자 교육 (매년 1시간 이상 필수)
 - 참가대상자 : 600여명 (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)
 - 신청기한 및 방법 : 2018년 11월 9일(금)까지 / 신청서 메일(daejon@gni.kr) 발송
- ※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며, 세미나 1·2부 모두 참석자에게 신고의무자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
□ 세부 일정

일 정	시 간		내 용	
접 수	13:30 - 14:00	30´	접 수	
1부. 기념식	14:00 - 14:05	5´	개회 및 국민의례	
			내빈소개	
	14:05 - 14:15	10´	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시상식	
	14:15 - 14:20	5´	아동학대예방 영상시청	
	14:20 - 14:45	25´	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	
	14:45 - 14:55	10´	휴식	
2부. 강연	14:55 - 15:00	5´	발표	‘아동학대 현황보고’ (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영미 팀장)
	15:00 - 16:00	60´	기조강연	‘아동학대 관련 법률’ (법무국 인권과 유태권 변호사)
	16:00 - 16:10	10´	폐회	

☞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령[아동복지법 26조,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]

○ (교육 대상 및 시간) 기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와 관련한 교육(‘신고의무교육’)을 실시하여야 함.

참고**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안내**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 제2항

순번	신고의무자 직군	신고의무자 직군 해당 법
1	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
2	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
3	아동복지전담공무원	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
4	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7조의 2
5	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	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6	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7	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, 제34조
8	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0조
9	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2조, 제18조
10	구급대의 대원	「소방기본법」 제34조
11	응급구조사	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
12	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,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	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, 제10조
13	유아교육 교직원 및 강사	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, 제23조
14	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	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
15	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16	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
17	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	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, 제8호
18	청소년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「청소년보호법」 제35조
19	초, 중등 교직원, 전문상담교사, 산학겸임교사, 보건교사, 영양교사, 교육복지사 등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, 제19조의2, 제22조
20	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
21	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	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4조
22	아이돌보미	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
23	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	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
24	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	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